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: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입교육업무 처리지침

◇ 제·개정 이유

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도입을 위해 인·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하고,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면접시험을 개별면접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 선발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위원 수 조정[제1호라목1)]

-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시험단계마다 위촉하는 시험위원 수(3→2명)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

나. 집단·개별시험에서 개별시험으로 통합[제4호나목1)부터 3)]

-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별면접으로 통합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심층면접이 가능하도록 면접시간을 확대함

다. 면접위원 대상 교육방법 및 평정서식 마련[제4호다목, 라목]

- 공정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평정방법,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,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배점 변경에 따른 평정서식을 개정함

라.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 변경[제6호마목]

-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